

동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본 유치원 규칙은 본원에서 유아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본원은 동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.

제3조(위치)

본원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길 6(평산리 72-1)에 두며, 우산분교장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2길 23(우산리 825번지)에 둔다.

제2장 교육연한 · 학기 및 휴업일

제4조(교육연한)

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한다.

제5조(학기)

① 학기는 매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,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 일수,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한 날까지,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.

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,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한 날까지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6조(휴업일)

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1. 관공서의 휴업일
2. 개교기념일: 4월 20일
3. 여름휴가, 겨울휴가, 학년말 휴가 및 기타 휴가(각종 체험학습휴가)의 기간과 일수는 수업일수(180일)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.

4. 전항 외에 비상재해, 전염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(이하 '교육장' 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5. 주5일제 수업 운영에 따른 토요일휴업일

② 본 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제3장 학급 편제 및 유아정원

제7조(학급편제) 본 원의 학급수는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.

제8조(유아정원) 본 원의 정원은 교육장이 배정한 정원으로 한다.

제4장 교육 내용

제9조(교육과정)

본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‘교육감’ 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

제10조(수업일수)

① 본 원의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유치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이때 교외체험학습자는 따로 정한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교외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학습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업시간)

본 원의 수업운영은 교육과정반(3~5시간)으로 운영하되, 수요자 요구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6장 입학 · 재입학 · 전학 · 휴학 · 퇴학

제12조(입학)

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로 한다. (단, 만5세아 우선 입학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유아를 선발한다.)

②입학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, 인가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.

제13조(재입학)

만 3,4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유아와 만6세아 중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.

제14조(전학, 편입학)

공·사립유치원에서 본원으로 전학 및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내에서 허가한다.

제15조(휴학 및 퇴학)

①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가 원장에게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1차 독촉장으로 출석을 독려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 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하는 유아
2.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아

제7장 수료 및 졸업

제16조(수료 및 졸업)

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여한다.

① 만 5세아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. 단, 만 5세 유아라도 수업일수 3분의 2 이하일 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.

② 만 3, 4세의 유아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.

제8장 수업료 및 기타의 비용 징수

제17조(수업료)

본 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, 교육과정상 필요한 기타 비용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9장 유치원 운영위원회

제18조(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)

- ①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.
- ②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장 규칙의 개정절차

제19조(규칙개정절차)

원장이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규칙 개정위원회를 조직·운영하여 개정안을 작성한 후 교직원 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- ① (시행일)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